2018년도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4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 4. 20.(금요일), 11: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영규(위원장), 김명자, 김상보, 김용덕,
김지민, 박상미, 심승구, 양종승,
연제영(미등), 임장혁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제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공개
2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공개
【검토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대상 종목 조사자 검토 및 추천	비공개
【보고사항】		
4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인정	공개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04-001

1. ‘제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 제안사항

‘제염’의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차 회의(‘18.2.23.)에서 ‘제염’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8.3.8～)하고, 종목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17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보고(‘17.1.26.)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학술연구용역 실시(‘17.8.21.~12.18.)

○ 종목 지정 예고 검토(무형문화재위원회 제1차 회의, ‘18.2.23)

- ‘제염’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함
-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2) 예고사항(관보 제 19209호 / 2018.3.8 / 문화재청 공고 제 2018-82호)

○ 예고내용

- 문화재명 : 제염
- 지정사유

・우리나라는 소금산지가 없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바닷물을 원료로 하여 소금을 생산함. 자염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이어져온 천일염전은 1907년에 도입되어 100여년 지속되어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자염법은 갯벌 흙, 바닷물, 햇볕을 이용하여

얻은 함수를 소금가마에 붓고 불을 지피는 방식이고, 천일제염법은 오로지 햇볕과 바람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 「제염」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 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 학술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점,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동·서·남해안 모든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어 우리나라의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 예고결과 : 이의제기 없음.

라. 검토의견

○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차 회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제염'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제염'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
-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안건번호 무형2018-04-002

1.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 제안사항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차 회의(‘18.2.23.)에서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8.3.16～)하고, 종목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17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보고(‘17.1.26.)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학술연구용역 실시(‘17.8.7.~12.14.)

○ 종목 지정 예고 검토(무형문화재위원회 제1차 회의, ‘18.2.23)

-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함
-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2) 예고사항(관보 제 19215호 / 2018.3.16 / 문화재청 공고 제 2018-92호)

○ 예고내용

- 문화재명 : 온돌문화
- 지정사유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烟道)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됨.

・우리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

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난방이 특징으로 방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과 생태환경 활용기술 등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온돌을 바탕으로 한 주거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줌. 또한, '온돌방'은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 됨.
-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해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이며, 특히,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 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 예고결과 : 이의제기 없음.

라. 검토의견

○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차 회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
-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04-003

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대상 종목 조사자 검토 및 추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 고 사 항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04-004

1.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인정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보존회의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인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보존회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의 전환을 신청('18.4.6.)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전승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86.11.1지정)

○ 보유단체 : 석전대제보존회('86.11.1 인정)

○ 전승자현황

- 명예보유자 : 권오흥('36년생, 남/집례, '96.9.10 보유자 인정)

2) 추진경과

○ 2013년도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13.11.8.) 검토 및 보고

□ 검토안건 :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계획 검토

- 검토내용 : 대규모 합동성 의례·축제 종목은 보유자 인정 지양

※ 해당종목 : 종묘제례악, 종묘제례, 석전대제, 사직대제, 안동차전놀이, 영산줄다리기 등

□ 보고안건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전승자 충원 방침 검토 회의 결과 보고

- 보고내용 : 소수의 예능보유자보다 다수의 전승자에 의해 전승 및 실연되는 종목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종목으로 전환하도록 단체종목 전승자 인·선정 방식 개선안 보고

※ 해당종목 : 종묘제례, 석전대제, 사직대제

○ 석전대제보존회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신청(‘18.4.6)

3) 후속조치 계획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승인 및 보존회 통지(‘18.4월)

○ 보유단체 전수교육지원금 상향 조정 지원(‘18. 5월부터 월 3,500천원→월 5,500천원)